

태권도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2. 17. ~ 3. 3.(12일 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 등 8명

■ 대상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 감사내용

- 조직·인력·복무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
-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 등 회계업무 적정성
- 태권도진흥 지원 사업 추진 실태
- 태권도진흥 정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태
- 태권도진흥 정보화 및 종합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2.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원)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인원)		
31	12,847,890	14	2 (5)	3 (12,847,890)	13 (9)	1		11	11				1

3. 감사처분 요구 내용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1	<p>○ 태권도원 모객대행사 제도 운영·관리 부적정</p> <p>- 태권도원 단체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해 '15년부터 모객대행사(매년 9~26개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하여 왔으나, 모객실적 인정기준 불명확, 시설이용료 수금·관리체계 비효율 등으로 법적분쟁과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단체고객 유치실적도 매년감소('15년 22% → '19년 5%) 및 특정대행사 편중 등 근본적인 업무개선 방안 마련 필요</p>	<p>○ 주의/통보</p> <p>- 단체고객 유치, 시설 이용료 수금 및 수수료 지급 관련 업무 철저</p> <p>- 태권도원 단체고객 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업무 개선방안 마련</p>
2	<p>○ 태권도 상설공연 관리 부적정</p> <p>- 대학 등의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운영하면서 인원구성 및 공연내용, 공연자 안전대책(상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나 계약이행각서(승낙사항) 작성 등의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탁자의 각종 보고 및 이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상설공연 위탁사업 운영·관리 미흡</p>	<p>○ 주의</p> <p>- 계약절차 준수 및 위탁 운영·관리 업무 철저</p>
3	<p>○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p> <p>-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 예산('17~'18년은 민간경상보조금/320목, '19년부터 해외경상이전/340목)은 국가기관인 재외문화원에 재교부할 수 없는데도, 사업관리와 정산 등이 수월하다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재외문화원에 재교부·집행('17~'20년 29억 원 상당)</p>	<p>○ 통보</p> <p>-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개선 방안 마련</p>
4	<p>○ 태권도 승품·단 심사관련 비용의 체육기금 집행 부적정</p> <p>- ○○○○협회의 승품·단 심사를 태권도원으로 유치하면서 심사시행기관(협회)이 응시자로부터 받은 심사수수료로 처리해야 할 필수비용(협회의 임원·심사위원·운영요원 숙·식비, 다과비 등 '17~'19년 기간 38백만 원 상당)을 체육진흥 기금으로 집행·지원</p>	<p>○ 통보</p> <p>- 민간단체 행사 유치 시 체육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p>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5	<p>○ 태권도원 기념품 구매 업무처리 및 관리 규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기념품 수요 조사와 계획 수립 후 일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였고, 동일·유사품목이라도 구매 업체별·시기별로 단가가 상이하는 등 부적정한 구매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구매·관리 절차와 기념품 제공·배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념품을 방만하게 구매·활용 	<p>○ 주의/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요조사를 통한 일괄구매 및 적정한 계약방법 적용토록 관련 업무 철저 - 기념품의 체계적인 구매·관리 방안 마련
6	<p>○ 홍보 관리업무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전략적 홍보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로 전북 중심의 지방지와 태권도 전문지에 편중된 언론홍보, 단순·반복적 형태(신문사 누리집 배너 활용 이미지 홍보 등)의 홍보업무를 추진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전략적 홍보방안 마련 추진
7	<p>○ 상징지구 조성공사 계약 및 설계변경업무 부당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①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적정성 평가항목을 임의로 만점 처리하여 탈락대상 업체를 낙찰자로 부당 선정(담당자 적격심사업무 태만), ② 경쟁입찰 대상인 전시·인테리어공사와 설계변경 용역을 기존공사의 설계변경사항으로 포함하는 등 설계변경 부당처리, ③ 특정 물품의 설계변경 단가를 거래실례가격 등이 있는데도 견적가격 또는 1인 견적에 의해서만 부당 결정,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누락등 하도급 관련업무 태만 	<p>○ 문책/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등(4명) 문책 조치 - 관련책임자 등(3명) 주의 조치
8	<p>○ 시설용역비 목적 외 사용(자회사 대표이사 차량 구입 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도 시설관리위탁용역의 불용예정 인건비 예산(총 84백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 유산과)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인 설립예정 자회사('20.1.20. 설립·등기)의 대표 이사 전용차량과 사무기구 구입에 사용('19.11.20.~12.10./66,531천 원) 	<p>○ 문책/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장(1명) 문책 조치 - 관련책임자 등(2명) 주의 조치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9	<p>○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예정가격을 기존 원가계산 자료 등 미활용한 채 관행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12건/ 7,506천 원)하거나, 원가 계산결과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따로 정하여 계약 발주(5건/ 5,406천 원),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자 심사 시 정량평가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30% 초과하여 배점 부여, ③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체결 등 계약관련 업무 부적정 	<p>○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철저
10	<p>○ 예산 비목 집행 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비로 구매해야 할 명절 상품권(급여성 경비)을 일반 수용비에서 구매('18~'19년 중 4건, 33,600천 원),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28건 316,728천 원을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 	<p>○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 철저
11	<p>○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 등 관련 규정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의 접수·사용액이 상당함(54억)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없어 기부금 접수·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내규 등 제정 필요 	<p>○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 관련 내부 규정 마련 등 제도적 개선 필요
12	<p>○ 관사 및 물품 관리 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관사 공과금 등 운영비 1,395,370원을 재단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최근 3년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태블릿 31대를 분실하고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사 및 물품 관리 소홀 	<p>○ 시정/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예산에서 지급한 이사장이 사용한 관사 운영비(1,395,370원) 환수조치 - 특별 재물조사 실시 등 물품관리 업무 철저
13	<p>○ 태권도전문수련관 건립공사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전문수련관(평원관) 설계공모심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이 없는 내부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공사감리자와 공식 승인 절차 없이 구두로만 설계변경을 협의하는 등 설계변경 승인 전 우선 시공하도록 묵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검토 소홀로 	<p>○ 시정/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8,938,050원) 환수조치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설계변경 검토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8,938,050원을 초과 지급(허위증빙) 등 공사감독 업무 부적정	승인 등 공사 관련 업무철저
14	○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을 안전관리책임자(사무총장)에게 보고(결재)하는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안전점검 등의 비용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적정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전체 시설물이 아닌 일부 시설물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지적 사항(벽체 균열, 개구부 안전망 미설치 등)에 대해 미조치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 주의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철저
15	○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 태권도 선수 훈련 등을 위한 숙소의 용도로 운영되는 도약관 객실 중 과반수 이상(62.3%)이 화재에 취약한 일반벽지 사용,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대변기, 소변기 등의 편의시설 미설치,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품 미구매 및 실내조명기기 LED제품 미설치(32%)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부적정	○ 주의/통보 -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철저 - 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하는 방안 마련
16	○ 시설물(연수시설, 객실) 이용료 부과 등 기준 마련 필요 - 「태권도원 경기장운영 규정」과 「태권도원 이용료 규정」에 시설 이용료 단가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고, 시설이용 감면 대상,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의 명확한 기준을 「태권도원 이용료 규정」 등에 반영하지 않고 대관 시마다 내부결재 등을 통해 결정·적용하는 등 일관성 없이 업무 처리	○ 통보 - 이용료(대관료) 규정 일원화, 감면 대상,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의 명확한 기준을 「태권도원 이용료 규정」에 반영하는 등 시설물 이용료 부과방안 개선
17	○ 정보시스템 및 무선랜 운영·관리 부적정 - 신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18.7.)하면서, ① 기존 전자문서를 이관하지 않아 2개 시스템 사용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추가 소요(9백만 원), ② 전자결재시스템 등 중요 정보시스템을 서버가 아닌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반 업무용 컴퓨터에서	○ 주의/통보 -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보안 관련 업무 철저 - 웹호환성 확보 및 백업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운영하거나, 전자문서 등 중요 데이터의 유실 방지 대책(백업 이중화) 미흡, ③ 웹 호환성을 준수하지 않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게시판 등 일부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태권도원 방문자용 무선랜을 업무망과 분리하지 않은 채 운영함으로써 해킹위험 노출	
18	○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지침('19.10.2.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임직원이 조퇴, 외출, 출장 등을 실시할 경우, 복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여러 차례 복무처리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 소홀	○ 주의 - 임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임직원(3명) 주의조치
19	○ 국외출장 업무처리 및 국외어학훈련제도 운영 부적정 - 국외출장 시 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전 심사를 미이행(32건)하거나 관행적으로 숙박비 정액 경비 지급(42건/71,868천 원), ② 초청 기관의 숙박 제공시에도 해당 숙박비 감액(2,514,470원)없이 여비지급 등 국외출장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태권도원 ‘취업규칙’에 따라 어학요건 등 선발기준, 연수기관 선정·지원 규모 등 교육훈련 관련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공신력 없는 해외 사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 실시 및 교육계획 미이행 등 교육훈련제도 부실 운영	○ 주의/통보 - 과다 지급된 국외출장 여비(2,514,470원) 환수 조치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훈련 방안 마련
20	○ 승진 업무처리 부적정 - ① 연 1회 근무성적 평정, ② 평정점수 오기 등 부실하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③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특정인사위원의 추천과 동의만으로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승진 임용자를 결정하는 등 승진 업무처리 공정성·투명성 결여	○ 주의/통보 - 관련 규정 준수하는 등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철저히 하고, 담당직원(1명) 주의조치 - 인사평정절차 정비 및 객관적인 승진심사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지조치 사항(1개 처분) : 요청기관의 공문 등을 확인하는 등 외부강의 관리 업무 철저(현지주의)